

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제2차 정례회 보건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2018. 11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보건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8년 11월 28일
보건·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6일

나. 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

보건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18. 11. 28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)

가. 제안이유

소통체계 및 전문성을 강화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갈등에 대한 적기 진단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관리협의체로 개편·운영

(안 제8조, 제11조 ~ 제14조)

- 갈등조정협의회를 부구청장 직속 갈등관리협의체로 구성·운영
- 주민배심원단 및 비상임 갈등 조정관의 협의체 참여 및 의견 수렴
- 주민배심원단 운영 근거 신설
- 갈등관리협의체 협의결과를 갈등관리위원회에 보고

2) 비상임 갈등 조정관 지정 · 운영 근거 마련(안 제15조)

3)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및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8. 9. 19. ~ 10. 10.) 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김동영)

가. 개정 취지

본 개정안은 공공정책의 수립 또는 추진 중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

하고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구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임.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현행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관리협의체로 변경하며,
 - 갈등관리협의체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
 - 구성원은 10명에서 15명의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으로 하되, 사안에 따라 당사자를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지역 주민과 주민구정평가단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과 갈등관리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위촉한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을 협의체 회의에 참석시켜 합리적 갈등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,
 - 협의체 협의결과를 갈등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완·강화함.

다. 종합의견

- 행정기능의 확대·강화와 함께 행정 감시자 또는 참여자로서 주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,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.
- 현행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 사안의 이해관계자(당사자, 공무원) 또는 관련 전문가(단체)를 협의회 위원과 참석자로 규정하고 있으나,

- 개정안을 보면, 주민배심원단을 참석자에 포함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어,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협의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,
- 또한, 갈등관리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위촉된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을 운영하는 경우, 해당 사안의 갈등해결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.
-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「지방자치법」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, 또한, 조문의 표현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여야 하나,
- 다만, 일부 조문에서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용어가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어 조문의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,
 -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, 안 제13조제2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여 갈등관리협의체의 구성원과 구성 인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렵고,
 - 안 제15조, 제16조, 제19조에서 ‘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’을 ‘비상임 갈등 조정관’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으므로,
 - 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.

5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안 제13조제2항을 의미전달이 분명하도록 수정
- 안 제15조, 제16조, 제19조의 잘못된 표기 수정

나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13조제2항을 “의장은 사안별로 5명 이상 8명 이하의 갈등 관리협의체를 구성하며, 위원은 당사자 및 갈등관리협의체로 한다.”에서 “의장은 갈등 사안에 따라 당사자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협의체 위원 중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.”로 수정
- 안 제15조, 제16조, 제19조의 “비상임 갈등 조정관”을 “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”으로 수정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7. 토론요지 : 생략

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- 붙임 1) 수정안 및 수정대비표 1부.
2) 관계법령 1부.

<수 정 안>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의장은 갈등 사안에 따라 당사자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협의체 위원 중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.

안 제15조 제목 “(비상임 갈등 조정관 등의 운영)”을 “(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 등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의 “비상임 갈등 조정관”을 “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”으로 한다.

안 제16조 중 “비상임 갈등 조정관”을 “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”으로 한다.

안 제19조 중 “비상임 갈등 조정관”을 “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”으로 한다.

<수정대비표>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3조(협의체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의장은 사안별로 5명 이상 8명 이하의 갈등관리협의체를 구성하며, 위원은 당사자 및 갈등관리협의체로 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3조(협의체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<u>의장은 갈등 사안에 따라 당사자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협의체 위원 중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5조(비상임 갈등 조정관 등의 운영)</p> <p>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<u>비상임 갈등 조정관</u>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·활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5조(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 등의 운영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 <u>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~ 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6조(비밀유지) 위원회 위원과 협의체의 위원 및 제15조의 <u>비상임 갈등 조정관</u>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</p>	<p>제16조(비밀유지)</p> <p>..... <u>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<p>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.....</p>
<p>제19조(수당지급 등)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체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5조의 <u>비상임</u> <u>갈등 조정관</u>,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(수당지급 등)<u>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</u>.....</p>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